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2017. 1.

위자료 연구반[※]

※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자료 인정액이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 국가 경제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법원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6. 7. 20. 대전지방법원이 주최한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연구반은 전국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들로 구성되어, 2016. 7.부터 2016. 10.까지 「교통사고, 대형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유형의 선정»,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설정», 「특별가중사유 및 가중 범위», 「일반중액·감액사유 및 조정 범위」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2016. 10. 20.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민사)』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파일은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이 널리 활용됨으로써 보다 더 합리적인 위자료 산정실무가 확고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불법행위 유형별 특수성

가.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실무연구회가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이를 공표하고, 이를 각급 법원에서 채택함으로써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실무의 기준이 되어 왔다.

위 실무연구회는 2015. 1.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여 이를 공표하였고, 현재 각급 법원에서 채택 중이다. 이에 가해자의 단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별가중 이전의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삼는다.

나. 대형재난사고

대형재난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빚은 대형 참사로서,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규명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유족의 분노와 울분 등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손해의 확대 방지 요청, 동종 사고 발생의 억제와 예방의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요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항공기 사고의 경우 피해 승객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 및 고통의 정도가 자동차 사고 등 다른 사고보다 중한 점, 항공기 사고에 관한 책임의 소재, 범위, 배상액을 둘러싸고 항공운송인 측과 피해자 측의 견해 차이로 최종적인 피해보상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하고 자동차 사고 등에 통용되고 있는 정형화된 위자료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대형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시 위자료 기준금액은 교통사고의 경우보다 상향된 금액으로서, 2억 원으로 설정한다.

다. 영리적 불법행위

영리적 불법행위는 기업이 영리추구의 과정에서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서, 인간 생명과 신체의 존엄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이익의 획득에만 치중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생활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인체안전성과 무해성 등에 관한 불신과 공포·불안을 야기하였으며, 사업의 규모와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윤리의식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가중되며, 나아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의 예방과 억제가 가능한 정도의 배상이어야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의 성립과정, 태양 및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지위의 호환불가 등 교통사고에 의한 불법행위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하여 대형재난사고에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사정도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산정 시 마찬가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 시 위자료 기준금액은 3억 원으로 설정한다.

라.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의 경우 피해자는 인격권 침해로 정상적인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나, 이를 산술적·경제적·재산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배상하기는 어려워 충분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가 사실상 곤란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즉, 명예·신용훼손으로 피해자의 기존 생활과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일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망한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기준금액의 설정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지만 위와 같은 중대한 피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대 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직업적·사회적 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용, 상호·상표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 피해」는 피해자의 기존 개인생활·사회생활·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나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위와 같은 「중대 피해」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단계적 산정방안 채택

위자료에 관한 심리는 「해당 유형 포섭 여부에 관한 심사」 ➡ 「기준금액의 특별가중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 ➡ 「위자료 증액·감액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 및 위자료 액수 결정」 순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3단계 산정방법론은 다른 불법행위 유형과 비교하여 1단계부터 「급격하게 고액인 기준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단계적·차등적 위자료의 산정이 가능하고, 특히 가해자의 행위불법적 요소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당해 불법행위의 개별적 특수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어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구체적 산정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3. 불법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의 설정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위자료의 본질, 법적 성격, 위자료 산정 사례, 비교법적 검토, 불법행위 유형별 특수성과 현 시대의 제반 여건 등을 종합하여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설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 유형		기준금액
교통사고		1억 원
대형재난사고		2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명예훼손	일반 피해	5,000만 원
	중대 피해	1억 원

4. 특별가중사유 및 가중금액의 설정

가. 특별가중사유의 구성방안

위자료의 기준금액을 가중하는 특별가중사유는 가해자 요소(행위불법의 중대성)만으로 단 일하게 구성하였다. 즉 피해자 요소(결과불법의 중대성)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나. 유형별 특별가중사유의 구성

가해자의 행위불법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특별가중사유의 불법행위 유형별 구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

교통사고 가운데 ①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② 음주운전·약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인 경우, ③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④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

(2) 대형재난사고

대형재난사고 가운데 ①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 ② 부실 설계·시공·제작에서 기인한 사고인 경우, ③ 관리·감독, 운영상의 중대한 주의의무 또는 안전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④ 관리·감독기관과 운영 및 시공 업체 등의 결탁·담합·은폐·조작·묵인 등이 있었던 경우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

(3) 영리적 불법행위

영리적 불법행위 가운데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② 영리행위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수단·방법에 의한 경우, ③ 영리행위로 인한 가해자의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④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능성 또는 재화·용역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경우, ⑤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

(4) 명예훼손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행위 가운데 ① 허위사실에 기한 행위, ② 특정인을 포함하여 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경쟁자에게 영업상 타격 등을 입히거나 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한 행위 등 악의적·모해적·영리적 행위, ③ 전파성·인지도·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또는 이를 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행위불법이 중하다고 보아 이를 특별가중사유로 구성한다.

다. 가중금액의 설정

특별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단계의 기준금액을 가중한다.

다만,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개별·특수성에 비추어 특별가중사유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사유의 정도가 중하여 가중금액만으로 손해의 전보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의 추가증액도 당연히 가능하고, 반대로 특별가중사유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가중금액의 감액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행위는 가해행위의 태양과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따라 훼손된 명예·신용의 가치가 매우 커서 1단계의 기준금액과 2단계의 가중금액만으로 손해를 전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불법행위 유형과 마찬가지로 가중금액을 기준금액의 2배로 하되, 그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가중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경우 그 가중의 한도를 설정하여 배상액 범위를 미리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존재하는 개별·특수성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방안에 가중금액의 초과가중이 가능함을 명시하되, 그 가중의 한도는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유형별 가중금액의 설정 방안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한 불법행위 유형별 가중금액 설정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불법행위 유형		기준금액	가중금액	
교통사고		1억 원	2억 원	
대형재난사고		2억 원	4억 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 원	6억 원	
명예훼손	일반 피해	5,000만 원	1억 원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도록 초과 가능
	중대 피해	1억 원	2억 원	

5. 일반증액·감액의 사유 및 범위의 설정

가. 일반증액·감액사유의 설정

(1) 일반증액·감액사유의 설정 일반

산정방안이 3단계에서 제시하는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는 예시적인 것이다.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의 구체적 액수를 정하는 데에 참작하여야 할 위자료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빠짐없이 산정방안에 정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증액·감액사유는 크게 행위불법 중심의 가해자측 사정과 결과불법 중심의 피해자측 사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나아가 ① 행위불법 중심의 가해자측 사정은 (i)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 내지는 책임의 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와 (ii) 기타의 개별 사정으로, ② 결과불법 중심의 피해자측 사정은 (i) 피해자의 개별 사정과 (ii) 피해 회복의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에 기초하여 개별적인 일반증액사유와 일반감액사유를 구성한다.

(2) 일반증액사유의 설정

(가)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를 일반증액사유로 구성한다.

(나) 가해자의 개별 사정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나 감액을 강권하거나 회유한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또는 이를 시도한 경우를 일반증액사유로 구성한다.

(다) 피해자의 개별 사정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은 고통이 큰 경우, 피해자의 시신 훼손 또는 시신 수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족이 겪는 고통이 큰 경우, 피해자가 아동·미성년자이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일반증액사유로 구성한다.

(3) 일반감액사유의 설정

(가) 가해자의 과실·책임정도 및 가해행위의 동기

천재지변이나 기타 가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외부의 사정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가해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매우 경미한 경우 등 사고의 발생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일반감액사유로 구성한다.

(나) 가해자의 개별 사정

가해자가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와 사고 수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의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를 일반감액사유로 구성한다.

(다) 피해자의 개별 사정

피해자에게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실이 1단계에서 기준금액을 감액하는 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반영되었더라도 추가적인 감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일반감액사유로 구성한다.

(라)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이나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와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위로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일반감액사유로 구성한다.

나. 일반증액·감액 범위의 설정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의 적용 시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유형의 위자료 산정방안에 적용되는 일반증액·감액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pm 1/2$ 범위 내로 정한다.

다. 구체적 위자료 액수의 결정

산정방안이 제시하는 일반증액·감액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시적인 것이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위자료의 액수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1단계 기준금액과 2단계 특별가중을 거쳐 산정된 위자료 액수를 $\pm 1/2$ 범위 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이러한 최종적인 위자료 결정 단계에서는 피해의 정도, 특별가중사유, 일반증액·감액사유 등을 비롯하여 개별 사건에 존재하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